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1/14


# 이사회 운영규정

주성엔지니어링(주)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 목 차

<b>제 1 장 총 칙</b>		<b>4</b>
제 1 조 【목 적】		4
제 2 조 【적용범위】		4
제 3 조 【권 한】		4
<b>제 2 장 구 성</b>		<b>4</b>
제 4 조 【구 성】		4
제 5 조 【의 장】		4
제 6 조 【감사의 출석】		5
제 7 조 【관계인의 참석】		5
<b>제 3 장 운 영</b>		<b>6</b>
제 8 조 【종 류】		6
제 9 조 【소집권자】		6
제 10 조 【소집절차】		6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제 11 조 【결의방법】 ..... 6

제 12 조 【부의안건】 ..... 7

제 13 조 【권한의 위임】 ..... 7

제 14 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 7

제 15 조 【의사록】 ..... 7

**제 4 장 위원회 ..... 8**

제 16 조 【위원회의 구성】 ..... 8

제 17 조 【이사회에의 재부의】 ..... 8

제 18 조 【위원회 부의사항】 ..... 8


제 19 조 【통지의무】 ..... 8

**제 5 장 기 타 ..... 9**

제 20 조 【부속실 등】 ..... 9

제 21 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9

**(별표 1) 이사회 부의 및 보고사항 ..... 11**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권 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제2장 구 성

### 제 4 조 【구 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5 조 【의 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제 1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 2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Classification :	<p style="text-align: center;"><b>규정</b></p>	Revision No:	00
	Title :	<p><b>이사회 운영규정</b></p>		Page :

제 3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세계 산업·기술·경제흐름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선행할 수 있는 글로벌 시각과 통찰력을 가진 자
3.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하고 협업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
4. 기술개발·영업 및 운영·경영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회사 내외부로부터 모범과 존경을 받는 자

② 이사회 의장의 유고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정방법은 이메일, 서면 등으로 한다. 지정한 대행자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그 원본과 사본은 이사회 의장과 경영관리·전략 담당 대표이사가 각각 보관한다.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공증한 내용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지정한 대행자가 없을 시에는 차상위자 순으로 대행하며, 차상위자는 사내 등기이사 중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④ 이사회 의장의 역할은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회 산하 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에서 의안(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안건 포함)을 제안 및 제외할 수 있고, 회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6 조 【감사의 출석】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지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조 【관계인의 참석】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 제3장 운 영

### 제 8 조 【종 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9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장)을 준용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 의장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긴급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안건을 긴급 상정 및 제외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 제 10 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의 1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유선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 11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

	Classification :	<p style="text-align: center;"><b>규정</b></p>	Revision No:	00
	Title :	<p><b>이사회 운영규정</b></p>		Page :

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부의안건】**

- ① 이사회에 부의 및 보고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 13 조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 제4장 위원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및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은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추가적인 이사회 내 산하 위원회의 설치에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이사회 의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② 경영위원회는 2인 이상 4인 이내 이사로 구성하며, 반드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 8인 이내 이사로 구성하며, 반드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여야 한다.
- ④ 각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

### 제 17 조 【이사회에의 재부의】


위원회는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 18 조 【위원회 부의사항】

- ①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 19 조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이사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 결의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9/14

## 제5장 기 타

### 제 20 조 【부속실 등】

- ①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필요 시 이사회 결의 없이 법률, 회계, 경영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 21 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10/14

이 규정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이사회부의사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11/14

(별표 1) 이사회 부의 및 보고사항

[이사회 부의사항]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각자 및 공동대표의 결정

단, 대표이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 1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 2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 3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당 회사의 사내 등기이사인 자

3) 미래 산업·기술·경제흐름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선행할 수 있는 글로벌 시각과 통찰력을 가진 자

4) 모범, 통찰력, 용기를 갖추고 회사 내외부로부터 모범과 존경을 받는 자

5)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하고 협업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자

(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3)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4)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위원의 선임·해임

(5)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심의, 결의


(6) 주주총회의 소집

(7) 영업보고서의 승인

(8)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

(9)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10)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12/14

- (11)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12) 신주발행, 사채의 발행
- (13) 준비금의 자본전입
- (1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5)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
- (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17) 분기배당의 결정
- (1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9)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분할합병
- (20) 일반공모증자의 결정
- (21)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
- (22)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 (23)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24) 교환사채의 발행
- (25)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 (26)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1) 정관 변경
-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3)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 (4)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등
- (5) 이사·감사의 해임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 (9) 사후설립
- (10) 주식의 액면미만 발행
-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13/14

(12) 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의 소각

(1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

나. 보통결의 사항

(1) 등기이사, 감사의 선임

단, 등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독립이사**는 정관 제29조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2) 등기이사, 감사의 보수한도의 결정

(3) 재무제표의 승인

(4) 주식배당의 결정

다. 특수 결의

(1)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3.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신규사업 Project 착수여부에 대한 결정 포함)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단, 사업계획의 승인은 업무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성의 승인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사업환경의 변동성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에게 위임한다.

(3)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

(4)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

(5) 50억 이상의 취득, 처분 및 양도

(6) 50억 이상의 신규 차입

(7)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

(8)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9)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


(10) 기업정보공시의 감독

(11)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12)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13)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이사회 운영규정	Page :	14/14

- (15) 50억 이상의 출자, 처분 및 50억 이상의 시설투자
- (16) 50억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채무면제
- (17)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 (18) 안전보건업무 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평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9)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비재무적 주요 경영 현안 검토·승인

[이사회 보고사항]

1. 이사는 3개월에 1회이상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영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
3.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연계된 환경경영 이슈 및 성과
6. 그 외 기타 주요 환경경영 이슈 및 성과